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8 선고 2021가단51755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창

변 론 종 결 2022. 6. 13.

판 결 선 고 2022. 8. 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E 사이에 2018. 9. 16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3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 C는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. 9. 16.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3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관련 사건의 확정

○ E의 채권자 F 주식회사는 피고 C,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0837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. 7. 22. 아래와 같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.

즉, 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 C 사이에 2018. 9. 16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,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되, 위 부동산의 시가 1억 원 중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5,200만 원을 뺀 나머지 4,800만 원 중 E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7,384,615원(= 4,800만 원 × 2/13,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)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.

② 별지 목록 1, 2, 41)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 D 사이에 2018. 9. 16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, 피고 D이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배우자 H로 하여금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.

○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, 항소심(광주지방법원 2020나62944)은 2021. 12. 2.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21. 12. 18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3. 이 법원의 판단

가.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 부분

(1)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.

(2)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F 주식회사에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.

(3)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, 수익자(전득자)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,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'피보전채권액 전액'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(4) 수익자인 피고 C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는 앞서 보았듯이 7,384,615원이고,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전부 받아들인다.

나. 별지 목록 1, 2,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 부분

(1)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.

(2) 별지 목록 1, 2,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.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,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 기각한다.

4. 결론

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, 피고 D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소송비용은,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(특히, 원고가 2021. 7. 22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. 12. 2.에 이르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확정된 점), 소송의 승패결과,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,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.

판사 서영호

별지

1)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지번에 오기가 있다. 정확한 지번은 'G'이다.